

신구조문 대비표

1. 약관명 : 추가약정서(가계대출 금리감면용)
2. 시행일 : 2025년 7월 1일
3.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변경약관 적용 여부 : 미적용

현행	개정	비고
추가약정서(가계대출 금리감면용) 「별표」 부수거래 감면금리 항목별 감면조건 세부기준 감면항목: 급여이체 감면조건: 급여이체는 매월 건당 50만원<신설> 이상의 급여성 자금이 본인 명의의 <신설>자유로운 원화계좌로 본인이 아닌 제3자에 의해 입금되는 경우에 한하여 금리감면 조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구체적으로 아래 3가지 중 하나에 해당할 경우 급여이체로 판정합니다. <신설> 1. 손님이 직접 ‘급여일’을 지정(등록) 하고, 전후 1영업일 포함 총 3영업일 사이에 건당 50만원<신설>의 급여성 자금 (카드대금, 보험료, 수수료 등 비급여성 자금은 제외)이 입금될 경우 ※ ‘2과 3의 방식’은 손님의 소속 단체의 급여이체 처리방식에 따라 결정되므로, ‘급여일’ 등록을 통해 급여 인정 누락을 최소화 할 수 있습니다. 2. 자금이체시 ‘적요’란에 급여로 추정하는 문구^{주<신설>}가 포함되었을 경우 주<신설> 급여로 추정되는 문구는 급여, 임금, 월급, 봉급, 연봉, 상여, 성과, 보너스, BONUS, PAY, SALARY, 등록직장명 등이 있으며, 급여로 추정할 수 있는 새로운 문구가 발생할 경우 추가하고 있습니다. <신설>	추가약정서(가계대출 금리감면용) 「별표」 부수거래 감면금리 항목별 감면조건 세부기준 감면항목: 급여이체 감면조건: 급여이체는 매월 <삭제> 50만원^{주1)} 이상의 급여성 자금이 본인 명의의 입출금이 자유로운 원화계좌로 본인이 아닌 제3자에 의해 입금되는 경우에 한하여 금리감면 조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구체적으로 아래 3가지 중 하나에 해당할 경우 급여이체로 판정합니다. ^{주1)} 아래 1의 방식은, ‘건당’ 50만원 이상인 경우만 인정하며, 아래 2 및 3의 방식은 ‘월합산’ 50만원의 경우도 인정합니다. 1. 손님이 직접 ‘급여일’을 지정(등록) 하고, 전후 1영업일 포함 총 3영업일 사이에 ‘건당’ 50만원 이상의 급여성 자금 (카드대금, 보험료, 수수료 등 비급여성 자금은 제외)이 입금될 경우 <삭제> 2. 자금이체시 ‘적요’란에 급여로 추정하는 문구^{주2)}가 포함되었을 경우 ^{주2)} 급여로 추정되는 문구는 급여, 임금, 월급, 봉급, 연봉, 상여, 성과, 보너스, BONUS, PAY, SALARY, 등록직장명 등이 있으며, 급여로 추정할 수 있는 새로운 문구가 발생할 경우 추가하고 있습니다. 다만, 가지급, 건강보험 등 비급여성 적요는 제외하며, 영업점 창구 통장거래 및 자동화기기 입금분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용어 삭제, 용어 추가, 주식 추가. '25.7월이후 변경예정인 급여합산 내용으로 변경 강조부호, 용어 추가 위치 이동 비급여성 적요 및 미인정 거래수단 기재

현행	개정	비고
3. 자금이체시 은행간 처리구분 코드^{주<신설>}가 급여 유형으로 이체될 경우 주<신설> 은행간 처리구분 코드에는 급여 및 상여코드 이외 4대 공적연금 (국민연금, 사학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이 포함되어 있으며, 4대 공적연금은 인정금액기준 (50만원이상)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감면항목: 적립식상품납입 감면조건: <생략> 감면항목: 제휴카드결제 감면조건: 하나카드로 매월 당행 본인 원화계좌에서 결제하는 조건이며, 통장에서 인출되는 금액 기준입니다. (외화계좌 결제금액<신설>은 제외) <신설> 매월 30만원 이상 인출된 경우 [기본] 감면 조건이 충족한 것으로 인정되며, 매월 70만원 이상 인출된 경우 [기본] 및 [추가] 감면 조건이 모두 충족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정상적으로 결제일에 결제되는 금액에 더하여, 손님이 결제대금 선결제를 신청하여 본인계좌에서 출금(카드사로 본인이 이체하는 경우 제외)되는 선결제 금액은 선결제(출금)가 이루어진 그 달 실적으로 포함되며, 할부거래의 경우 해당 월에 출금된 할부금 상당액이 해당 월의 실적으로 인정됩니다.	3. 자금이체시 은행간 처리구분 코드^{주3)}가 급여 유형으로 이체될 경우 ^{주3)} 은행간 처리구분 코드에는 급여 및 상여코드 이외 4대 공적연금 (국민연금, 사학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이 포함되어 있으며, 4대 공적연금은 인정금액기준(50만원이상)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위 2 및 3의 방식은 손님이 소속한 단체의 급여이체 처리방식에 따라 결정되므로, 사전에 ‘급여일’ 등록을 통해 급여 인정 누락을 최소화 하시기 바랍니다. 감면항목: 적립식상품납입 감면조건: <생략> 감면항목: 제휴카드결제 감면조건: 하나카드로 매월 당행 본인 원화계좌에서 결제하는 조건이며, 통장에서 인출되는 금액 기준입니다. (외화계좌 결제금액 및 하나머니 충전금액^{주4)}은 제외) ^{주4)} 하나머니는 하나카드사가 운영하는 하나금융그룹 생활금융플랫폼인 ‘하나머니 앱’에서 사용하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일종인 포인트이며, 하나머니로 충전되어 결제되는 카드 이용대금은 실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매월 30만원 이상 인출된 경우 [기본] 감면 조건이 충족한 것으로 인정되며, 매월 70만원 이상 인출된 경우 [기본] 및 [추가] 감면 조건이 모두 충족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정상적으로 결제일에 결제되는 금액에 더하여, 손님이 결제대금 선결제를 신청하여 본인계좌에서 출금(카드사로 본인이 이체하는 경우 제외)되는 선결제 금액은 선결제(출금)가 이루어진 그 달 실적으로 포함되며, 할부거래의 경우 해당 월에 출금된 할부금 상당액이 해당 월의 실적으로 인정됩니다.	위치 이동 및 용어수정 변경없음 인정제외 관련 문구 구체화

현행	개정	비고
체크카드 사용금액의 경우, 결제일이 아닌 통장에서 실제 출금이 이루어진 일자가 속한 해당 월의 실적으로 인정합니다.	체크카드 사용금액의 경우, 결제일이 아닌 통장에서 실제 출금이 이루어진 일자가 속한 해당 월의 실적으로 인정합니다.	